

부산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가단3029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13. 접수 제30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20. 3. 30. 피보험자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보험기간 2020. 3. 30.부터 2024. 3. 29.까지로 하여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초과운행부담금 및 해지위약금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23. 5. 8. 사망하여 그 무렵부터 임차료가 미납되었고, F이 2023. 7. 19. 임차료 미납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2023. 8. 11. 보험금 4,229,014원을 지급하였다. 2024. 1. 12. 기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4,357,620원이다.

다. C의 가족으로 모 G, 누나 D, 누나 E, 누나 피고가 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부는 C와 피고의 부 H의 소유였는데, 2015. 12. 7.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6. 4. 27. G 3/11 지분, D, E, 피고, C 각 2/11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G 3/11 지분, D, C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3. 3.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23. 3.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마. C 상속재산에 대하여 모 G는 2023. 8. 8.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피고는 2023. 10. 31.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C가 보험사고 발생 4개월 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망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망 C의 상속인들인 D, E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23. 1. 15.부터 2023. 2. 6.까지 동생인 C에게 수차례 대출대금 미회수기간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변제목적으로 받은 것이다. 증여계약 당시 C가 정상적으로 개인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C는 투병생활을 하다가 2개월 후인 2023. 5. 8. 사망하였고, 사망 이후 다수의 연체통지서가 C 주거지에 송달되어 상속재산 조회 후 다수의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선의이다.

3. 피고의 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진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

- 1) C가 암투병 중이었으나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23. 1. 1.부터 2023. 5. 8. 사망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매출액 127,625,962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 79,961,756원인 등 정상적으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증여계약 내지 이전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대출금 등을 연체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가 보증한 렌터카 임차료도 정상적으로 납부되다가 C가 사망한 이후 연체된 것으로 보인다.
- 3) C는 2023. 1. 15.부터 피고에게 다음 달 결제가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C가 요청한 돈을 송금하였다.
- 4) 망 C 외에도 피고의 모친 G와 언니 D도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을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 해주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주은영

별지